

의안번호	2126169
의 퇴 인	노용호의원
회 답 일	2024. 01. 25.
추계번호	24A0009
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제1항제6호 (중소기업자의 범위)	○ 중소기업의 육성시책 대상에 「의료법」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제1항제6호 (중소기업자의 범위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중소기업자의 범위(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“ 「의료법」 제33조제2항제3호¹⁾에 따른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를 추가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에 의료법인 등이 포함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의 범위 및 지원 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고,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의 대상이 되는 의료법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

1) 「의료법」 제33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.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·병원·요양병원·정신병원 또는 의원,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, 한의사는 한방병원·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,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.

3.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(이하 "의료법인"이라 한다)

- 중소기업부에 따르면, 2021년 기준 총 7,563개 개인병원에 12,118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, 2022년 기준 총 6,990개 개인병원에 12,454억원을 지원하고 있음
- 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인은 44개임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개략적으로 추계하는 방법으로,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과 중소기업 사업체 수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1개당 평균 지원금을 산출하고, 그 단가를 「의료법」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의 수에 곱하여 재정소요를 산출할 수 있음. 그러나 의료법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과 성격, 특성 등이 중소기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과 다를 수 있어 객관적인 추계는 한계가 존재함

- 이에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V. 작성자

□ 작성자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김은기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은기	02-6788-3750	ekkim@assembly.go.kr